

의안번호	2219708
의 회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8.
추계번호	26A332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2항 신설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용 지원 － 2. 임신·출산·육아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,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세무·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 지원 － 3. 소상공인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－ 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2	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(기금의 사용 등)	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(제1항) － 17의4. 소상공인의 <u>임신·출산·육아</u> 관련 부담 완화 등 일·가정 양립 지원 *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대상 일·가정 양립 지원의 범위 정비 － (현행) 출산·육아 관련 부담 완화 － (개정안) 임신 추가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2항 신설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4(기금의 사용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 소상공인의 출산·육아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임신·출산·육아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 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임신·출산·육아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(안 제9조제2항 신설)
 1.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용 지원
 2. 임신·출산·육아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,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세무·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 지원
 3. 소상공인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
 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임신·출산·육아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이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진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소상공인의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사업은 없음
 - 참고로, 고용노동부는 「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」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’과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·육아지원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등 ‘일하는 사람’에게 출산수당 및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동 세부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335억 9,400만원이 편성됨

[표 1]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-내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예산	2027년 예산안
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 지대 해소-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수당 (일반회계, 1339-301)	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· 육아지원을 받지 못하는 ‘일하는 사람’*에게 출산수당 및 육아수당 지원	28,289	24,329
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 지대 해소-고용보험 미 적용자 육아수당 (일반회계, 1339-301)	* 1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유 계약자(프 리랜서),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 수급(180일)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고 용보험법 적용제외자		9,265

자료: 고용노동부,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
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
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